

(통권 22-1호)

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2. 1. .

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(예산정책담당관)

분 야 별 목 차			
분 야	제 목	참고 (소관 위원회)	페이지
I. 경제	1. 2022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	전체	1
II. 재정	2. 공공투자사업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과 대응방안	기획경제	4
	3.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체계 구축방향	전체	6
III. 정책	4.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	기획경제	8
	5. 중복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	행정문화	10
	6.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 에 관한 연구	기획경제	12
	7. 인구소멸 위기상황, 저출생지원정책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?	복지환경	14
	8.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를 위한 정책방향	기획경제	16
IV. 법률 제·개정	9.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 － 레저세 배분 관련	행정문화	19

1. 2022년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

-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0년에 마이너스성장
 - 그러나 강력한 거시정책 대응, 제조업과 수출 기반의 경제구조, 효과적인 방역체제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
- 2022년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배경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진전되는 가운데 예상대로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이전의 잠재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, 가계 및 기업부채의 누적 속에 금융불균형이 확대된 것은 불안요인임
- **세계경제 여건**
 - 세계경제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충격으로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(-3.1%)을 기록하며 급속하게 위축됨
 - 2021년에는 5.9%의 빠른 성장률 반등을 보인 후 2022년에는 4.9%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하였음
 - 하지만,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가능성, 팬데믹 종식 여부,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화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
- 2022년에는 미국, 유럽에 이어 주요 신흥국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글로벌 수요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공급병목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물가상승률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
 -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으로 경기부양적이었던 주요국의 재정지

출 규모도 점차 줄어드는 데다 물가 불안과 금융불균형 우려로
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완화 정도가 줄어들어 거시정책의 성장 부
양효과가 축소될 전망이다

○ 2022년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망

- 우리 경제는 2021년 4.1%, 2022년 3.2%의 성장이 예상되며,
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겠으나,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아
진 상황임
- 2022년에는 우리나라 및 신흥국의 백신 접종확대로 견조한 수
요 회복이 기대되지만, 글로벌 고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, 우
리나라와 주요국의 통화 완화정책 축소, 높아진 자산가격과 부
채규모에 따른 금융불균형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이다

○ 2022년 GDP를 항목별로 살펴보면, 백신 접종 확대로 대면접촉
활동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 성장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기
존 수주 실적이 착공으로 이어져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.

- 수출과 설비투자는 2021년 같은 빠른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
우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의 점진적 해소, 신흥국 백신 접종확
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

○ 총수출 및 총수입은 2021년 각각 8.6%, 7.6%의 성장세로 반등
한 후 2022년에는 각각 3.0%, 4.2%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
전망임

○ 고용상황은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율이 2021년 60.4%, 2022년
60.7%로 높아지고 취업자 수가 2021년 34만명, 2022년 26만명
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

○ 2022년 대내외 위험요인

- 첫째,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리스크, 둘째, 글로벌 高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, 셋째,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리스크 존재, 넷째, 중국의 정치-경제 복합 리스크 존재, 다섯째, 가계부채 리스크 존재, 여섯째, 기업부채 리스크 존재

○ 정책적 시사점

-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기반이 크게 훼손된 대면서비스업 및 자영업 종사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지속 예상됨
- 향후 거시경제 정책은 확대된 하방위험에 유의하면서 경제의 회복 정도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

○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감염병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다시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봉쇄체제로 회귀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

○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단의 스마트화, 국가 R&D 시스템 개편,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, 재교육, 고용알선, 도시·산업·수송 그린인프라 확대, 저출산·고령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출처 : 한국금융연구원(2021. 11.)

2. 공공투자사업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과 대응방안

○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 때 사회적비용 산정 관련 다양한 쟁점 발생

-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에서 국가 전체적인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의 추진 근거자료로 삼고자 시행
- 사회적비용은 생산 주체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과 재화 외에도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정의
- 사회적편익은 유·무형적 시민효용 증가에 대한 가치의 합으로 자본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로 설명

○ 이 중 사회적비용의 산정은 경제성분석에서 편익을 산정하는 만큼이나 중요.

- 이는 사업비, 환경비용, 기회비용 등의 비용산정 방법과 반영여부가 편익/비용 비(B/C ratio)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
- 특히 일관성 없는 사회적비용의 산정은 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판단에 혼란을 초래 가능
- 이러한 사회적비용은 경제성분석에서 어떤 비용항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
- 따라서 해당사업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산정하거나 특정 대안을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유발
- 그 이유는 비교적 개발밀도가 낮은 투자사업에 비해 서울시 도

심지 가로 내 사업은 주거지에 인접하기 때문에 소음비용, 교통 유발에 따른 사고비용 등 환경비용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

- 이는 계획된 공사비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. 이러한 이유로 사업비 산정에서 도심지의 특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고나 환경비용을 경제성분석에서 계량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항상 부족하여 신축사업의 공간이 제한적. 따라서 투자사업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서도 추진되므로 **용지보상비 및 토지활용에 대한 기회비용 산정 등 토지활용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분석의 비용쟁점 대응**이 필요
- 이러한 사회적비용 산정의 쟁점들은 기존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 **투자사업의 일관된 평가를 위한 비용쟁점을 정리하고 대응**하는 연구가 필요

출처 : 서울연구원(2021.12)

3.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체계 구축방향

○ 여건변화

- 사회경제 여건의 악화: 저성장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세입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저출산, 고령화로 세출은 확대해야 하는 상황
- 국세 위축의 부정적 파급효과: 지난 10년간 국세 신장률의 저하로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해주는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세입체계 지속적 유지가 어려움
- 국가채무의 급증: 경기침체 가운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발생으로 국가채무가 급증, 중앙과 지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
- 여건변화로 중앙과 지방 모두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나 재원기반이 저성장 흐름 고착으로 악화 추세

○ 지방재정체계 구축방향

- 광역과 기초 간 재정균형을 연계한 기간세 체계정립
 - 특별시, 광역시의 경우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 중 한 세목을 자치구의 기간세로 전환 검토
 - 도, 시군은 기간세인 등록면허세,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, 시군은 지방소득세 세수기반 확장 필요
-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 도입
 - 환경오염 통제 및 부작용 해결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, 저출산고령화 부담에 대한 지방복지세 도입
 - 기업의 소득 대신 외형에 과세하는 지방세 도입 검토
-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조정원칙 마련
 - 세수가 커진 광역단체의 국가보조사업 보조율 축소, 세수가 커

진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지원 축소

-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개편

-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교부세를 재원보장과 관련된 보통교부세와 지역 간 재정형평화 기능을 하는 지역균형발전교부세로 나누어 운영하는 체계구축 검토

- 지방세 확충과 연계한 국고보조금제도 정비

- 자체재원 확충 시 재정여건 차이 고려하여 중앙정부기능 지방에 넘기거나,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조정 필요
- 국고보조금 운영은 중앙, 지방 간 협치방식으로 개선 필요

-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사업 빅 딜

-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6대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중앙에서 부담 필요.
- 노령층 기초연금 재원은 중앙이 전적으로 책임질 필요

- 지방복지재정 준칙의 마련

- 사회복지비가 지방재정에서 높은 비중 차지하고, 매년 증가해 큰 부담이 되므로, 지방복지재정 준칙 마련, 관리 필요

- 맞춤형 재정분권 모색

-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운영체계를 달리하는 맞춤형(혹은 이원적) 재정분권 필요
- 일정기준 이상은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, 일정기준 이하의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혼합한 지방세입 체계

출처 : 지방재정학회(2021.11)

4.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

○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·고령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**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 소요 전망**

-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은 재원조달에 따른 비용과 세대 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
- 재정지출의 수혜와 재원조달의 부담이 세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
- 재정지출 중 연령별 이전지출의 확대가 중장기 경제성장과 세대 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

○ 분석결과, **이전지출 확대로 인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,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의 상환시점부터는 감소**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이러한 효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, 현 세대는 효용이 증가하지만, 미래 세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부정적 효용을 가질 것으로 예상
- 또한 한 세대 내에서도 정부지출의 수혜가 높은 노년층과 유년층의 효용이 노동연령층의 효용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차별화된 영향이 나타남
- 다만,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이 합계출산을 상승으로 이어져 인구가 증가하거나,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, 미래세대의 효용감소는 상쇄될 수 있으며 현 세대를 위한 이전지출이 미래 세대의 효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

-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 세대에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대 간 효용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2021.12)

5. 중복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

-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현황 검토, **충청북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사항 도출**
 - 보통교부세 교부액, 기준재정수요액, 기준재정수입액, 재정부족액 등 모든 항목에서 충청북도 본청의 규모가 작음
 - 기초수요, 지역균형수요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충청북도 본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
 - 충청북도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발굴하고,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함

- 충청북도 본청 및 시군의 보통교부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, **충청북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부분에 대한 관심 필요**
 - 현황분석 결과 충청북도는 최근 5년 간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에서 평균 1,402백만원 페널티, 2019년과 2020년에 페널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
 -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항목 중 ‘행사·축제 경비 절감’과 ‘지방보조금 절감’ 항목에서 많은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 - 지방보조금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업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기관을 통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지방보조사업의 감액 또는 폐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

· 표 5-1 |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 ·

구분	신규수요 및 제도개선 건의 사항
1	- 지역균형수요 환경보호비(폐기물, 산업단지 수요) 산정기준 변경 - 폐기물 : 10% ⇒ 15% - 산업단지 : 분양면적 ⇒ 조성면적
2	-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비율 조정(180→90%) - 기존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감소의 심각성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구 자연감소 수요 신설
3	- 지방보조금 절감 수요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자체 재원 금액만 인센티브 대상금액 반영 - 보조사업 지방비 과부담 보정 수요 신설
4	보정수요액 산정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수요 신설, 지역균형수요 항목에 체육시설 운영관리비 항목 신설
5	- 환경보호 관련 규제지역 수요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추가 -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작성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존재 시 선반영 후 해당부처 협의 반영 조정
6	- 지역균형수요에 인구감소지역 관련 수요반영, 보정수요액 항목에 인구 감소 지역발전수요 신설 -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증가 및 물가상승을 반영 향후 5년간 26.14%까지 단계적 상향
7	수요·수입 자체노력 반영시 페널티 항목만 반영하여 실질적 재정부족액 파악
8	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지방세 자체노력 반영지표 중 체납액 축소분야 페널티 가중, 폐지
9	교부세 감액 심의시 감사처분 요구시 조치를 요하지 않은 사항 감액 심의 제외

구분	신규수요 및 제도개선 건의 사항
10	- 미등록외국인수 보정인구 반영 -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심의 제외
11	-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km²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군 단위 지자체 특례군 수요 반영 - 지방교부세 법정률 매년 변경
12	산업단지 수요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가중치 상향(50→200%)
13	단양 석회광산 및 생산시설 면적 지역균형수요 반영
14	댐지역 수요 산정 시 댐 연접지역 인구수 가중치 적용
15	검역병해충 예방 수요 신설
16	기초수입액 및 보정수입액 차등산입율제도 도입
17	재정여건에 따라 조정을 차등 적용
18	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내륙도 수요 추가
19	오송 국책기관 이전지역을 지역균형수요에 추가
20	음성 꽃동네 등 대규모 복지시설 수요 반영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2021)

6.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

○ 재정분권 현황: 지방재정 및 이전재원 변화 추이

- (중앙 대 지방의 재정규모) 2020년 본예산 기준 총조세 대비 지방세수 비중은 약 23.8%, 정부 간 재정이전 규모는 약 177조원, 이는 국가예산 약 512.3조원의 1/3 수준
- (지방재정 항목별 증가 추이) 2020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(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) 규모는 약 110.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.1% 증가,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세입은 약 11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0.1% 증가

○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미친 영향

-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해당 지역의 실물 및 재정자산의 지표이므로 그 자체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를 의미
-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자본지출사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간 격차 완화효과가 있었음

○ 지방소비세가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, 지방소비세의 특징과 인구집중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중요 사례임

- 실질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전재원인 지방소비세의 증가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형평화보조금 기능을 함
- 특히, 권역별 기준으로는 두 효과 상쇄, 통계적 유의성 미확보

-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완화 목적인 이전재원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**재정분권정책과 인구이동의 관계에서도 고찰**
 - 실증분석에서 재정잉여(해당 지역의 지방세와 세출규모의 차이)가 클수록 인구 흡수 요인이 큰 것을 확인함
 - 재정잉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커지는 결과 보임

출처 : 조세재정연구원(2021.12)

7. 인구소멸 위기상황, 저출생지원정책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?

○ 인구소멸 위기가 저출생지원정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

- 인구소멸과 저출생지원정책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기도 시군의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재원별 분석 결과 모든 재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상관계수가 역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
- 이는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대상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저출생지원정책 예산을 상대적으로 예산 대비 많이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, 인구가 증가 또는 유지하여 인구소멸의 위기가 적은 지역일수록 관련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음

○ 여전히 출산 중심의 저출생지원정책 기조가 유지

-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생지원정책간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, 임신·출산지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- 이는 기초정부별로 출산축하금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시군별 출산축하(지원)금의 지원 규모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
-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양평, 가평, 여주 등은 셋째의 경우 1천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타 시군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
- 그러나 신생아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총 지원예산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음

○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만 7세 이후의 지원정책이 매우 부족

- 기초정부의 저출생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의존성이 높아 아동수

당/누리과정 등 만 7세 이전에 대부분의 지원이 집중

- 대응지방비가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아동수당, 그리고 순수광역사업인 누리과정 등의 예산이 기초정부 저출생지원정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
- 이는 31개 시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, 중앙정부사업으로 진행되는 일가정 양립(출산·육아휴직 등) 등은 기초정부 단위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음
- 특히 저출생과 관련한 교육·홍보, 가족지원(심리, 신체) 등의 가족부문 영역과 8세 이후에 대한 지원은 실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, 기초정부 단위에서는 매우 부족
- 결국 우리나라의 기초정부 단위에서의 저출생지원정책은 대부분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7세 이전,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정책편차가 매우 큰 상황임

○ 시군별 맞춤형 저출생지원정책 확대 및 신규과제 수립 필요

- 수도권 집중 및 높은 지가로 인한 서울에서 경기로의 이주 등 사회적이동을 고려하더라도 경기 31개 시군의 미래 인구감소는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
- 물론 경기도에서는 시군별 인구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, ‘경기도 인구정책 경진대회’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저출생지원정책의 적극적인 발굴을 유도하고 있으나,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임
- 따라서 현재 출산지원금 및 일부 영역에서 진행중인 시군별 맞춤형 저출생지원정책을 확대하고, 신규과제 발굴 노력 필요

출처 : 경기복지재단(2021.10)

8.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

○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

- 레저세는 「지방세법」제40조에 따라 경마, 경정, 경륜 및 소싸움을 과세대상, 해당 사업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에 대해 10%의 세율 적용
- 레저세는 경마, 경륜, 경정, 소싸움의 승자투표권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도박 등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등을 교정하고 사행행위의 소비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
- 본장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모두 신고·납부하고,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본장 사업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50%씩 신고·납부함
- 현재 레저세는 경마, 경륜, 경정 및 소싸움의 일부 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,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카지노, 복권,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레저세 개편의 필요성이 나타남

○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정책방향

-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카지노, 복권, 체육진흥투표권의 업종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들(경마, 경륜, 경정, 소싸움)과 같이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행산업들 간의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
- 카지노, 복권,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

적절성을 과세형평성, 자치단체 재원조달 기여도, 외부불경제 교정,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화 확대, 이중과세, 세수효과 측면에서 검토함
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‘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’을 통해서 모든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과세하는 것을 권고함 (2012. 12.)

○ 카지노는 사행산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및 외부불경제 해소 측면에서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적절하며, **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성 기여 측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적절한** 것으로 판단됨

- 카지노 사업자는 법인세, 소득세, 개별소비세, 재산세, 취득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으나, 이들 제세부담금은 레저세의 과세목적과 상이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없는 것 판단됨
- 카지노는 지방자치단체 조세 및 기금부담 수준이 경마, 복권 등의 타 사행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여 레저세 과세를 통해 자치단체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복권은 사행산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화 확대 효과측면에서 복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복권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제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사행행위인 복권에 대해 레저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행산업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됨
- 체육진흥투표권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수의 보편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분권화 확대 측면에서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복권과 같이 체육진흥투표권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는 없기 때문

에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과세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, 전국에 위치한 판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며, 높은 세수의 보편성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시사점 및 정책제언

-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, 복권,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할 경우, 레저세 과세에 따른 관련 기금의 재원 감소 및 조세저항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-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의 레저세 세수가 증가하고 지방재정 및 재정분권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 반면, 해당 사업자의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, 사행산업별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레저세 세율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
-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 중 해당 기금의 일부가 국고보조사업 및 공공재원의 형태로 자치단체에 이전되는 경우, **관련 사무의 자치단체이양과 함께 해당 기금의 일부를 레저세로 전환**하는 방안
-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체육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어, 체육진흥사업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**해당 사업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분을 레저세로 전환**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

출처 : 지방세연구원(2021.12)

9.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○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
- 경마,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·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,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, 도박중독, 교육상 문제, 교통혼잡, 주차문제,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,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
-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·군에서 징수한 **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**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

자료: 행정안전위원회 (제안일자 2021.12.9.)